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1.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통지 수단 확대 (안 제24조의11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보다 간편하게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절차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유지 의사를 확인·표시할 수 있는 수단에 기존의 서면, 전화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함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소비자는 휴면 신용카드를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간편하게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되고, 카드사는 서면 통지 비용 등을 절감 가능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 2.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확대 (안 제24조의14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, 거래취소·환불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\*됨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

\* '21.8.10일 국무회의 의결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정기 결제대금 변경 및 ·유료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, 거래취소·환불 관련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시행령 규제위 심사과정에서 공공요금·통신요금 등을 제외하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감독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

### 라. 입법효과

- 정기결제시 유료전환, 거래 취소,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